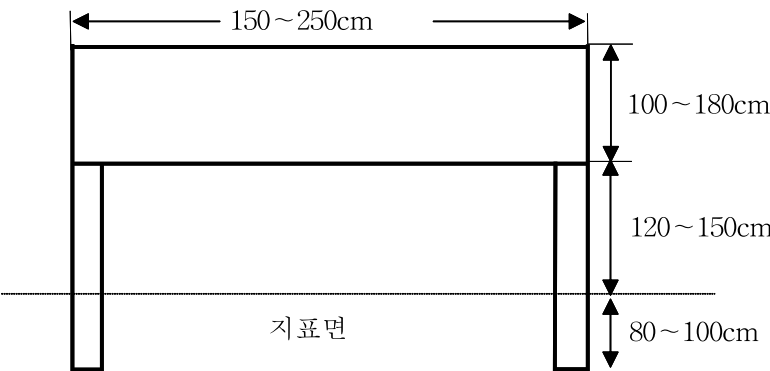


[별표 5]

안내판 및 표주(제18조제1항 관련)

1. 안내판

가. 규 격



재 질: 스테인리스 스틸 등 부식에 강하고 견고한 재질
바탕색 및 글씨 :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 또는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

나. 내용문안

1) 앞면(글자 배열은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)

여기는

상수원보호구역

입니다.

(신고 및 문의처)

○○도·시·군·구 ○○○과

전화번호: ○○○-○○○○

2) 뒷 면

알 린

1. 이 지역은 「수도법」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.
2.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「수도법」 제7조에 따라 아래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 래

(금지행위)

- (1) 특정수질유해물질·폐기물·오수·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
- (2)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
- (3) 수영·목욕·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
- (4) 행락·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
- (5)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
- (6)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
- (7) 「하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. 다만,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(일반친환경농산물은 제외한다)을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.

(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)

- (1)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·변경 또는 제거
 - (2)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
 - (3) 토지의 굴착·성토,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
-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「수도법」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
2. 표 주

